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511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박수영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차현영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1. 1. 28.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3.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68,000,000원의한도 내에서

최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9.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9.부터 2018. 6.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1. 19. 망인에 게 168,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50,000,000원, 2018. 6. 30.까지 118,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망인은 2019. 6. 10. 사망하였다.

나. 피고 C과 F은 2017. 4. 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 남구 H외8필지 I건물 제1층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C은 6/10 지분, F은 4/10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7. 4. 11.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C과 F은 2017. 4. 5. G 소유의 광주 남구 H외 8필지 I건물 제1층 K호 중 피고 C은 6/10 지분, F은 4/10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은 2017. 4. 11. 피고 C소유의 위 부동산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배우자였던 피고 B는 2018. 3.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00,000,000원은 피고 C의 L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753,6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후 2018. 3.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8. 5. 14. 망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의 요지

망인은 G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2016년경 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면서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2017. 4.경 자신의 명이가 아닌 동업자인 피고 C와 처남인 F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가 2018.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명목으로 피고 C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따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B사이에 2018. 3.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B 사이에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주장의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미 소멸한 손해배상채권을 어떻게 양도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의 요지

망인은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명목으로 자신의 동업자인 피고C과 처남인 F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과 F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C은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가 2018. 3.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망인과 사이에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자인 망인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C에게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망인의 동생인 M, N, O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서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따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망인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M, N, O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설령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처분 의사에 따라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 B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정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